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77
----------	------

제출일자 : 2025. 6. 5.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행정기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과 중심의 부서를 분리하고, 읍·면 맞춤형복지팀과 복지팀을 통합하여 복지서비스 제공의 일관성을 강화하며, 기준인건비 초과사용에 따른 부서별 인력을 재배치하여 조직운영의 합리성과 업무 추진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기구 개편

2.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사항

- 국 단위 개정사항 : 안 제3조, 제6조
 - 명칭변경 : 자치행정국 → 행정국
- 과 단위 개정사항 : 안 제5조 ~ 제10조
 - 기획예산과 : 과 분리(기획예산과 → 기획예산과, 홍보협력과)
 - 자치행정과 : 명칭변경(총무과)
 - 교통과 : 과 분리(교통과 →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 사회복지과 : 명칭변경(생활보장과)
 - 행복나눔과 : 명칭변경(장애인복지과)
 - 가족정책과 : 과 신설
 - 청소위생과 : 과 분리(청소위생과 → 청소자원과, 위생과)
 - 청소자원과 : 국 이동(주민복지국 → 경제환경국)
 - 안전하천과 : 명칭변경(안전총괄과)
 - 하수하천과 : 과 신설
- 팀 단위 개정사항 : 안 제5조 ~ 제10조
 - 기획예산과 : 팀 분리(정책사업 → 정책사업1, 정책사업2)
팀 이동(홍보, 혁신평가, 인구청년정책 → 홍보협력과)
 - 홍보협력과 : 팀 이동(홍보, 혁신평가, 인구청년정책 ← 기획예산과)
명칭 변경(혁신평가 → 평가지원)

- 도시공원과 : 신설(조경사업)
명칭 변경(공원개발 → 공원조성, 공원관리 → 조경관리)
- 교통행정과 : 팀 이동(교통행정, 차량관리, 차량등록 ← 교통과)
- 교통지도과 : 팀 이동(교통지도, 교통시설, 교통특사경 ← 교통과)
- 청소자원과 : 팀 이동(청소행정, 재활용, 폐기물관리 ← 청소위생과)
명칭 변경(재활용 → 자원순환)
- 생활보장과 : 팀 이동(주거의료복지 ← 행복나눔과)
- 장애인복지과 팀 이동(장애인복지 ← 사회복지과), 신설(장애인시설)
- 가족정책과 : 신설(아동정책), 팀이동(드림스타트, 아동보호 ← 행복나눔과,
여성가족 ← 복지정책과)
- 위생과 : 팀 이동(위생행정, 위생지도, 식품안전 ← 청소위생과)
- 도시정비과 : 팀 분리(농업시설 → 농업시설1, 농업시설2)
- 하수하천과 : 신설(하수관리), 팀 이동(하수시설 ← 도시정비과, 하천시설,
하천관리 ← 안전하천과)
- 체육진흥과 : 명칭변경(공공체육시설 → 체육시설1, 생활체육시설 → 체육시설2)
- 7개 읍면(화원읍, 다사읍 제외) : 팀 통합(복지+맞춤형복지 → 맞춤형복지)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25조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 ~ 14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없음

다.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2) 입법예고(2025. 5. 13. ~ 5. 28.) 결과 : 의견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7)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자치행정국”을 “행정국”으로 하고, “교육복지국”을 “주민복지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 교육정책과, 도시공원과, 미래공간과”를 “기획예산과, 교육정책과, 홍보협력과, 도시공원과, 미래공간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기획·정책사업·예산·홍보·혁신평가·인구청년정책”을 “기획·예산·정책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홍보·평가지원·인구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4. 녹지·조경사업·공원조성·정원·조경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의 제목 “(자치행정국)”을 “(행정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치행정국에 자치행정과”를 “행정국에 총무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행정국”을 “행정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경제산업과·교통과·환경과·농업정책과”를 “경제산업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환경과·청소자원과·농업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교통행정·교통지도·교통시설·차량관리·차량등록·교통특사경”을 “교통행

정·차량관리·차량등록”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교통지도·교통시설·교통특사경에 관한 사항
5. 청소행정, 자원순환, 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 중 “복지정책과·사회복지과·행복나눔과·청소위생과”를 “복지정책과·생활보장과·장애인복지과·가족정책과·위생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복지기획·노인복지·노인시설·여성가족”을 “복지기획·노인복지·노인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초생활보장·장애인복지·복지조사·복지관리”를 “기초생활보장·복지조사·복지관리·주거의료복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복지나눔·복지연계·주거의료복지·드림스타트·아동보호”를 “장애인복지·장애인시설·복지나눔·복지연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아동정책·드림스타트·아동보호·여성가족에 관한 사항
5. 위생행정·위생지도·식품안전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 중 “건설과·안전하천과·도시정책과·도시정비과·건축과·토지정보과”를 “건설과·안전총괄과·도시정책과·도시정비과·건축과·하수하천과·토지정보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안전관리·중대재해예방·민방위·자연재난·하천시설·하천관리”를 “안전관리·중대재해예방·민방위·자연재난”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가로정비·하수시설·농업시설·전기시설”을 “가로정비·농업시설·전기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하수관리, 하수시설, 하천시설,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제2항제2호 중 “체육진흥·공공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을 “체육진흥·체육시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어린이 칭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달성군 자치행정국장, 교육복지국장"을 "달성군 행정국장,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 교육복지국장,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전략국장, 행정국장,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전략국장, 행정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기획전략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장 및 기획예산실장"을 "국장"으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⑥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실장, 정책추진단장, 건설과장, 복지정책과장, 교통과장, 도시계획과장”을 “기획예산과장, 교통행정과장, 복지정책과장, 건설과장, 도시정책과장”으로 한다.

⑦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제2호 중 “건설과장, 도시계획과장, 공원녹지과장, 건축과장”을 “도시공원과장, 건설과장, 도시정책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

⑧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복지국장, 희망지원과장”을 “주민복지국장,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⑨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공원업무담당국장 및 기획예산실장, 공원녹지과장”을 “기획전략국장 및 기획예산과장, 도시공원과장”으로 한다.

⑩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⑪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⑫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군수, 자치행정국장, 건설도시국장, 문화관광국장, 기획전략국장”을 “부군수, 기획전략국장, 행정국장, 건설도시국장,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국의 설치)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전략국·<u>자치행정국</u>·경제환경국·<u>교육복지국</u>·건설도시국·문화관광국을 둔다.</p> <p>제5조(기획전략국) ① <u>기획전략국에 기획예산과, 교육정책과, 도시공원과, 미래공간과를 둔다.</u></p> <p>② <u>기획전략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u></p> <p>1. <u>기획·정책사업·예산·홍보·혁신평가·인구청년정책에 관한 사항</u></p> <p>2. (생략)</p> <p><신 설></p> <p>3. <u>녹지·정원·공원개발·공원관리에 관한 사항</u></p> <p>4. (생략)</p> <p>제6조(자치행정국)①<u>자치행정국에 자치행정과·세무과·징수과·회계과·종합민원과·정보통신과를 둔다.</u></p> <p>② <u>자치행정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u></p> <p>제7조(경제환경국) ① <u>경제환경국에 경제산업과·교통과·환경과·농업정책과를 둔다.</u></p> <p>② (생략)</p> <p>1. (생략)</p> <p>2. <u>교통행정·교통지도·교통시설·차량관리·차량등록·교통특사경에 관한 사항</u></p> <p><신 설></p>	<p>제3조(국의 설치)----- -----<u>행정국</u>----- -----<u>주민복지국</u>----- -----을 둔다.</p> <p>제5조(기획전략국) ① ----- <u>기획예산과, 교육정책과, 홍보협력과, 도시공원과, 미래공간과</u>-----.</p> <p>② (현행과 같음)</p> <p>1. <u>기획·예산·정책사업</u>-----.</p> <p>2. (현행과 같음)</p> <p>3. <u>홍보·평가지원·인구청년정책에 관한 사항</u></p> <p>4. <u>녹지·조경사업·공원조성·정원·조경관리에 관한 사항</u></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제6조(<u>행정국</u>)①<u>행정국에 총무과</u>----- -----.</p> <p>② <u>행정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u></p> <p>제7조(경제환경국) ① <u>경제환경국에 경제산업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환경과·청소자원과·농업정책과</u>-----.</p> <p>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u>교통행정·차량관리·차량등록</u>----- -----</p> <p>3. <u>교통지도·교통시설·교통특사경에 관한 사항</u></p>

현행	개정안
<p>3. (생략) <u><신설></u></p> <p>4. (생략) 5. (생략) 제8조(주민복지국) ① 주민복지국에 복지정책과·사회복지과·행복나눔과·청소위생과를 둔다.</p> <p>② (생략) 1. <u>복지기획·노인복지·노인시설·여성가족에 관한 사항</u> 2. <u>기초생활보장·장애인복지·복지조사·복지관리에 관한 사항</u> 3. <u>복지나눔·복지연계·주거의료복지·드림스타트·아동보호에 관한 사항</u> <u><신설></u></p> <p>4. <u>청소행정·재활용·폐기물관리·위생행정·위생지도·식품안전에 관한 사항</u> 제9조(건설도시국)① 건설도시국에 건설과·안전하천과·도시정책과·도시정비과·건축과·토지정보과를 둔다.</p> <p>② (생략) 1. (생략) 2. <u>안전관리·중대재해예방·민방위·자연재난·하천시설·하천관리에 관한 사항</u> 3. (생략) 4. <u>가로정비·하수시설·농업시설·전기시설에 관한 사항</u> 5. ~ 8. (생략)</p>	<p>4. (현행 제3호와 같음) 5. <u>청소행정, 자원순환, 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u> 6. (현행 제4호와 같음) 7. (현행 제5호와 같음) 제8조(주민복지국) ① 주민복지국에 복지정책과·생활보장과·장애인복지과·가족정책과·위생과-----.</p> <p>② (현행과 같음) 1. <u>복지기획·노인복지·노인시설-----</u> -----</p> <p>2. <u>기초생활보장·복지조사·복지관리·주거의료복지-----</u> 3. <u>장애인복지·장애인시설·복지나눔·복지연계-----</u> 4. <u>아동정책·드림스타트·아동보호·여성가족에 관한 사항</u> 5. <u>위생행정·위생지도·식품안전에 관한 사항</u> 제9조(건설도시국)① -----에 건설과·안전총괄과·도시정책과·도시정비과·건축과·하수하천과·토지정보과-----.</p> <p>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안전관리·중대재해예방·민방위·자연재난-----</u> 3. (현행과 같음) 4. <u>가로정비·농업시설·전기시설-----</u> -----</p> <p>5. ~ 8.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u><신 설></u></p> <p>9. (생략)</p> <p>제10조(문화관광국)① (생략)</p> <p>② (생략)</p> <p>1. (생략)</p> <p>2. <u>체육진흥·공공체육시설·생활체육 시설에 관한 사항</u></p> <p>3. ~ 4. (생략)</p>	<p>9. <u>하수관리, 하수시설, 하천시설, 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u></p> <p>10. (현행 제9호와 같음)</p> <p>제10조(문화관광국)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u>체육진흥·체육시설</u>-----</p> <p>-----</p> <p>3. ~ 4. (현행과 같음)</p>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군·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 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